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研究所
比較法學 第15輯(2004)

인도 행정법

김 남 철*

<목 차>

- I. 머리말
- II. 인도 행정법에 대한 이해
- III. 일반행정법
- IV. 개별행정법
- V. 행정심판소법(Administrative Tribunals Act)
- VI.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2)
- VII. 맷는말

I. 머리말

인도는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같은 아시아권에 속해 있지만, 인도에 관하여 알려진 바는 생각 외로 많지 않다. 특히 인도의 법제도 및 법학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무지의 상태다. 미래에 대한 무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도에 관한 연구, 특히 인도의 법제에 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와 인도의 상호 교류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

*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학부 조교수.

2 比較法學 (第 15 輯)

는 인도의 법제, 이 가운데 특히 인도의 행정법제에 그 초점을 맞추어보자 한다.

현재 인도의 법제에 관해서는 국내외에 소수의 문헌만이 존재할 뿐이고,¹⁾ 더욱이 인도의 행정법에 관한 문헌도 몇 편 되지 않는 실정이다.²⁾ 이와 같은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도 행정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되지만,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후행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여기에서는 인도 법제에 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인도의 행정법체계를 간략하게 개관해 보는 데 그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도 행정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도의 행정법을 현행법률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 이를 다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의 관점, 그리고 개별행정법의 관점에서 분류해 본다. 끝으로, 인도 행정법 가운데 특히 영미법계인 인도행정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심판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최근에 제정

-
- 1) 인도법제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예컨대 강경선, 인도헌법의 형성과정: 연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대학교 논문집(1998. 8), 189면 이하; 백좌홍 역, 인도에서의 법과 국가규제자본주의, 법학연구 4 (1993. 8),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79면 이하; 동인, 인도헌법의 후진 계급에 대한 보상적 차별정책과 카스트 정치, 법학연구 7 (1998. 2),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15면 이하; 박수철 편,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입법조사월보 201 (1991. 8), 국회사무처, 157면 이하; 김정후, 각국의 독점규제법규 비교연구, 강원법학 제14집 (2001. 12),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9면 이하 등이 있다.
 - 2) 인도 행정법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이규담, 각국의 지방자치 IX : 인도편, 입법조사월보 147 (1985. 8), 국회사무처, 124면 이하; 임승빈, 인도의 지방자치, 지방행정정보 54 (1996.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7면 이하; 조창현, 인도의 지방자치, 지방자치, 통권 165호 (2002. 6), 현대사회연구소, 76면 이하; 이한길 역, 인도의 조세제도, 입법조사월보 136 (1983. 10),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66면 이하; 송방섭 역, 주요국의 부유세제도, 국회도서관보 146 (1980. 4),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5면 이하; 장명근, 인도의 부유세법소개, 법제 6 (1977. 2), 법제처, 58면 이하; 정진환, 영미법계국가의 경찰제도연구, 인천대학교 논문집 제4집 (1982. 9), 219면 이하; 김해동, 각국의 부패통제: 법과 기구, 행정논총 제29집 제2호 (1991. 1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61면 이하가 있다.

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별도로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II. 인도 행정법에 대한 이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는 영국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영국법을 거의 그대로 계수하였고, 이에 따라 인도법의 전반적인 체계는 거의 영국의 법체계와 유사하다.

행정법은 공·사법을 이원적으로 구분하는 대륙법계에서 성립된 법영역이다. 이와는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가 등의 작용에 관한 특수한 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미에 있어서도 19세기 말엽부터 각 행정분야에 따른 기술적·전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의 권한, 권한 행사의 절차, 그 활동에 대한 사법심사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이 성립·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미에서의 행정법의 발달은 전통적인 법의 지배 사상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행정기관의 활동은, 별도의 행정재판소 또는 행정쟁송절차가 아닌, 일반 재판소에 의하여 통제되고, 또한 행정처분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미에서의 행정법은 근본적으로는 보통법(common law)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법에 대하여 그 독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대륙법계의 행정법과는 그 기본 원리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영미행정법도 성문의 법률과 위임입법 등의 광범위한 증가로 인하여, 불문법국가라는 전통적인 분류가 무색할 만큼, 무수히 많은 행정에 관한 법규법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영미행정

4 比較法學 (第 15 輯)

법은 공무원제도·공공기업·행정절차·지방행정 등 행정조직 및 권한에 대한 포괄적인 법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영국법과 거의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도, 행정에 관한 법체계는 존재하지만, 영미법의 전통으로 인하여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대륙법계 국가에서와 같은 ‘독자적인 공법영역으로서 행정법’의 관념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행정’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인도의 경우에도, 대륙법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공·사법 구별의 특수성에 따른 행정법규범을 제외하고는, 대륙법계 국가 못지 않은 수많은 행정법규범들이 존재하고 있다.³⁾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인도의 경우에는 우선 수많은 행정위원회가 있고, 이들의 조직과 권한에 관하여 규율하는 상당수의 법률을 중심으로 행정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밖에도 행정구역,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등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행정입법, 행정정보공개 등 행정작용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소법과 같은 행정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 외에도 인도에는, 경찰행정, 보건행정, 건설교통행정, 환경행정, 조세행정, 경제행정, 문화 및 교육행정, 정보통신행정, 자원 및 에너지행정, 군사행정, 법무행정 등 각종의 다양한 개별행정법분야에 걸쳐 상당수의 행정법규범이 정립되어 있다. 인도의 경우 이러한 법률(Acts) 이외에도 하위규범인 명령(Rules)과 규칙(Regulations)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문법국가들에 비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성문의 행정법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가 영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인도의 법학교육에서도 알 수 있다. 인도의 한 국립대학 로스쿨은 교과과정

3) 인도 법령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예컨대
인도 법률정보 시스템(<http://indiacode.nic.in>),
인도 법정보(<http://www.indialawinfo.com/bareacts/mainbare.html>)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에 있어서 영국이나 미국 로스쿨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인도에서도 영·미에서와 같은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이하에서는 인도의 행정법을 일반행정법과 개별행정법으로 구분하여 개관한다.

III. 일반행정법

1. 행정조직법

(1) 행정위원회

상술한 바와 같이, 영·미에 있어서는 보통법사상으로 인하여 공·사법의 구별이 인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법의 관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19세기 말엽부터 각 행정분야에서 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행정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인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영향으로 상당수의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의 권한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인도행정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에 관한 법률로는, 예컨대 전-인도 기술교육위원회법(All-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 Act, 1987), 인도 의약 중앙위원회법(Indian Medicine Central Council Act, 1970), 입법위원회법(Legislative Councils Act, 1957), 출판위원회법(Press Council Act, 1978), 강(하천) 위원회법(River Boards Act, 1956), 담배위원회법(Tobacco Board Act, 1975), 조사위원회법(Commissions of Inquiry Act, 1952) 등이 있다. 최근에는 소수자를 위한 국가위원회법(National

4) 예컨대, 국립인도대학 로스쿨의 교과과정
(http://www.nls.ac.in/academics/ug_courses.htm) 참조.

6 比較法學 (第 15 輯)

Commission for Minorities Act, 1992), 여성을 위한 국가위원회법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Act, 1990), 교사양성을 위한 국가위원회법(National Council for Teacher Education Act, 1993), 전기규제위원회법(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Act, 1998), 인도 국제관계위원회법(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Act, 2001) 등이 제정되었다.

(2) 주 재조직에 관한 법률

연방국가인 인도는 26개의 주와 연방정부의 직접 관할 하에 있는 6개의 연방직할시(Union 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⁵⁾ 이와 같이 인도 헌법이 연방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인도에서는 연방 이외에 각 주도 헌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즉 인도 헌법은 부칙 제7조에서 화폐, 조세, 외교, 국방 등에 관한 97개의 연방 권한목록, 보건, 교육, 농업, 경찰 등에 관한 66개의 주 권한목록, 민·형사법, 사회경제계획 등에 관한 47개의 연방과 주의 공통권한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에는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가 존재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권한의 법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동등하다.⁶⁾

이상과 같은 연방주의를 토대로, 인도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연방의회는 주를 재편하거나, 그 경계선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도에는 각 주의 재조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예컨대 인도 연방의회는 1956년 주 재조직법(States Reorganisation Act)의 제정을 통하여 주의 숫자를 27개에서 14개로 축소한 바 있다.⁷⁾ 그밖에 도 인도에서는 봄베이 재조직법(Bombay Reorganisation Act, 1960), 편집 재조직법(Punjab Reorganisation Act, 1966), 아ස람 재조직법(Assam

5) 주한 인도 대사관, 인도연방

(http://www.indembassy.or.kr/India_AProfile/IndUnion_Constrn_Fund_Rights_InKr.htm) 참조.

6) 인도에서의 연방제도의 형성과정과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강경선, 전개논문, 189면 이하 참조.

7) 강경선, 상개논문, 199면.

Reorganisation (Meghalaya) Act, 1969), 북동부지역 (재조직)법(North-Eastern Area (Reorganisation) Act, 1971), 비하르 재조직법(Bihar Reorganisation Act, 2000), 마드하 프라데시 재조직법(Madhya Pradesh Reorganisation Act, 2000) 등이 제정되었다.

(3) 독립한 행정기관에 관한 법률

인도에는 독립한 행정기관의 권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로는, 개발기관법(Development Authority Act, 1985), 인도 국도기관법(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Act, 1988), 공항기관법(Airports Authority of India Act, 1994), 인도 통신규제기관법(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Act, 1997), 데리 개발기관(징계권)법(Delhi Development Authority (Validation of Disciplinary Powers) Act, 1998) 등이 있다.

(4) 지방행정

인도의 지방자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가 발달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전통이 오늘날 인도 사회가 다민족, 다언어 등 다양성이 공존하고 이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이미 1688년에 인도의 도시 마드라, 봄베이, 캘커타에는 지방자치단체인 법인체가 설비되어 있었고, 인도 독립 후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연방정부 아래 26개의 주정부와 6개의 연방직할시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 정부의 책임 하에 구성·운영된다. 인도의 지방자치는 인구의 26.13%를 차지하는 도시지역과 73.87%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으로 구분된다. 인도헌법은⁹⁾ Part IX(제243

8) 조창현, 전개논문, 77면.

9) 인도헌법은, 예컨대

<http://www.indialawinfo.com/bareacts/mainbare.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8 比較法學 (第 15 輯)

조 - 243조 O항)에서 농촌기초자치단체인 Panchayat에 관하여, 그리고 Part IX A(제243조 P항 - 제243조 ZG항)에서 도시자치단체인 Municipality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크기와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다시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화되고 있는 예비도시지역에서의 Nagar Panchayat, (2) 소도시지역에서의 시의회(Municipal Council), (3) 대도시지역에서의 시법인(Municipal Corporation)¹⁰⁾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인도에서는, 예컨대 델리 시법인법(Delhi Municipal Corporation Act, 1957), 뉴델리 시의회법(New Delhi Municipal Council Act, 1994) 등이 제정되어 있다.

농촌지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인 Panchayat는 그 규모에 따라 (1) 마을 수준의 Panchayat(Panchayats at the village levels), (2) 중간규모 수준의 Panchayat(Panchayats at the intermediate levels), (3) 지구 수준의 Panchayat(Panchayats at the district levels)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는 벵갈 지구법(Bengal Districts Act, 1836), 편잡 지구위원회법(Punjab District Boards Act, 1883)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인도의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치기능을 수행하는데, 즉 지방세 등 지방공과금의 부과·징수,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를 관할하는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행정의 실권은 주정부가 과연한 수석행정관 또는 상위관료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인도의 행정적인 권한은 중앙집권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2. 행정작용법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도 행정법은 영미법의 영향으로, 주로 행정위

10) 임승빈, 전계논문, 60면, 이규담, 전계논문, 128면 참조.

원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성립·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특성에 따라 인도 행정법은, 영·미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에 따라 공권력(public power)의 행사를 보장하고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행정행위나 공역무가 중심개념을 이루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인도 행정법에서는, 영미법에서와 같이, 주로 입법권의 위임(Delegation of Power)과 이에 따른 행정입법(the rule making), 재량행위의 통제(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행정심판의 원칙(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등이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제정되어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법의 지배원리에서 나오는 자연적 정의 원칙이 곧 행정절차의 원칙이라고 설명되고 있고, 별도의 행정절차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인도의 경우에도 영국과 같이 별도의 행정절차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인도는 2003년 들어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2, 2003)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 제정되어 1998년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인도의 정보자유법의 내용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3. 행정구제법

인도는 350여 년에 걸친 영국의 오랜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특히 영국 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영미법에서는 공·사법의 구별 없이 국가나 일반 사인 모두 보통법이라 불리는 판례법(common law)의 지배를 받고, 이러한 전통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사법의 구별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른바 행정에 특유한 행정구제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행정소송제도나, 국가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책임을 규율하는 국가배상 및 행정상 손실보상과 같은 국가책임제도(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는 국왕소추법(The Crown Proceedings Act, 1947), 미국에서는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The Federal Tort Claims Act, 1946)이 각각 제정되었지만, 이는 과거에 인정되어 왔던 주권면책사상을 부인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를 통하여 행정에 특유한 별도의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영국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도는 대륙법계 국가에서와 같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나 행정소송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작용의 통제수단 또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행정재판소는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행정심판소법(Administrative Tribunals Act, 1985)이다. 이 법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기로 한다.

IV. 개별행정법

1. 경찰행정법

인도의 경우 1860년에 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듬해 경찰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근대인 의미의 경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경찰관을 군대에서 선발하여 임명하였는데,¹¹⁾ 1908년에 이르러서는 시험을 통해 경찰관을 선발하게 되었다.¹²⁾

인도에서 경찰에 관한 사항은 인도헌법 제246조 부칙 제7조에 따라 각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연방정부의 내무부는 중앙정보국을 통하여 주 경찰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인도경찰제도의 특색은 과거의 자치경찰제도에서 점차로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의 요소가 많이 채택되고 있고, 중앙정보국을 통한 통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이다.¹³⁾

인도의 경찰행정법분야의 입법례로는, 경찰법(Police Act, 1949), 경찰권한(권리제한)법(Police Forces (Restriction of Rights) Act, 1966) 등이 있고, 델리의 경우 델리 경찰법(Delhi Police Act, 1978)과 특별법으로서 델리 소방예방 및 안전법(Delhi Fire Prevention and Fire Safety Act, 1986) 등이 있다.

2. 보건행정법

보건행정과 관련된 법률은 주로 의약분야와 식품위생분야에 관련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의약품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 1940), 의약품(통제)법(Drugs (Control) Act, 1950), 약사법(Pharmacy Act, 1948), 장기이식법(Transplantation of Human Organs Act, 1994), 최면성 의약품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법(Prevention of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ct, 1988), 식품혼합물방지법(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4) 등이 있다.

3. 건설교통행정법

건설교통행정은 크게 도시개발행정, 농촌개발행정, 도로교통행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도시개발행정¹⁴⁾은 인도헌법에 따라 주의

11) 예컨대 1892년의 벵갈 군인 경찰법(Bengal Military Police Act).

12) 정진환, 전계논문, 227면 이하 참조.

13) 정진환, 상계논문, 229면.

12 比較法學 (第 15 輯)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연방의 입법권은 델리시와 그 밖의 연방직할시, 연방의 재산, 2 이상의 주 입법부가 연방에 입법권을 수권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도시개발행정과 관련하여 제정한 법률로는, 델리개발행정법(Administration of Delhi Development Act, 1957), 델리임대법(Delhi Rent Act, 1995), 수도지역계획위원회법(National Capital Region Planning Board Act, 1985), 델리아파트소유법(Delhi Apartment Ownership Act, 1986), 부동산의 수용 및 취득법(The Requisitioning And Acquisition Of Immovable Property Act, 1952) 등이 있다.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인도정부에는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 육로운송부(Ministry of Surface Transport)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입법례로는 항공법(Aircraft Act, 1934), 철도법(Railways Act, 1989), 캘커타 지하철(운영 및 관리)임시규정법(Calcutta Metro Railway (Operation and Maintenance) Temporary Provisions Act, 1985), 국도법(National Highways Act, 1956), 캘커타항만(수로안내)법(Calcutta Port (Pilotage) Act, 1948), 수로법(National Waterway (Allahabad-Haldia Stretch of the Ganga-Bhagirathi, Hooghly River) Act 1982; National Waterway (Sadiya-Dhubri Stretch of the Brahmaputra River) Act 1988; National Waterway (Kollam-Kottapuram Stretch of West Coast Canal and Champakara and Udyogmandal Canals) Act 1992) 등이 있다.

4. 환경행정법

인도 연방정부는 1985년 기준의 환경국(Department of Environment)

14) 이에 관하여는 인도 도시개발부 홈페이지
(<http://urbanindia.nic.in/mud-final-site/legislations/index.htm>) 참조.

과 농업성에서 관할하던 삼림 및 야생동물분야를 통합하여 환경삼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를 창설하였다. 환경삼림부는 삼림보호, 야생생물보호, 동물보호, 오염방지, 유해물질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한다.

인도는 헌법에 환경보전조항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환경관련법령도 약 200여 개에 달하고 있어 상당한 정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에 관한 주요 입법례로는, 먼저 환경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 산업(개발 및 규제)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 수질오염방지법(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수질오염방지세법(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Cess Act, 1977), 대기오염방지법(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공해배상책임보험법(Public Liability Insurance Act, 1991)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삼림보호에 관해서는 삼림법(Indian Forest Act, 1927), 삼림보전법(Forest Conservation Act, 1980)이 있고, 동물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동물학대방지법(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60), 야생동물보호법(Wildlife Act, 1972)이 있다. 그밖에도 생태학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이 제정되어 있다.

5. 세법

인도의 조세제도의 법적 근거는 인도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

15) 인도의 환경법제에 관하여 상세는 동경상공회의소, 인도의 환경투자정보(I), 폐기물 21(2001. 2), 일보코리아, 82면 이하 참조. 인도의 환경관련법령에 관한 정보는 인도 환경삼림부 홈페이지(<http://envfor.nic.in/legis/legis.html#A>) 참조.

헌법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과세하는 조세는, 직접세로서 소득세 (Income Tax), 일정한 재산보유에 과세되는 부유세(Wealth Tax)¹⁶⁾, 중여세(Gift Tax), 지출세(Expenditure Tax), 이자세(Interest Tax) 등이 있으며, 간접세로는 연방 매상세(Central Sales Tax) 및 관세 등이 있다.¹⁷⁾

조세에 관련된 법률로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 부유세법 (Wealth Tax Act, 1956), 중여세법(Gift Tax Act, 1958), 이자세법 (Interest Tax Act. 1987), 지출세법(Expenditure Tax Act, 1987), 특별 이윤세법(The Super Profits Tax Act, 1963), 기업(이윤)부가세법(The Companies (Profits) Sur-tax, 1964), 호텔수입세법(The Hotel Receipts Tax Act, 1980), 연방면허세법(The Central Excise and Salt Tax, 1944),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 연방 매상세법(The Central Sales Tax Act, 1956) 등이 있다.¹⁸⁾

6. 경제행정법

경제행정법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감독 또는 유도와 조정 등을 포함하는 법체계를 말한다.¹⁹⁾ 인도의 경우 경제행정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가 담당하고 있다. 경제행정과 관련하여 인도에는 상당히 많은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²⁰⁾ 이에 관한 주요법률로는, 경제행정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 재정기관(성실과 비밀의 의무)의 행정에

16) 부유세제도에 관하여는 장명근, 전개논문, 58면 이하; 송방섭 역, 전개 논문, 15면 이하 참조.

17) 인도 조세제도에 관하여는 이한길 역, 전개논문, 66면 이하 참조.

18) 인도 세법에 관한 정보는 인도 재정부 홈페이지

(<http://finmin.nic.in/topics/legislation/index.html>) 참조.

19)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1, 101면 참조.

20) 경제행정분야의 입법정보에 관하여는 재정부 홈페이지
(<http://finmin.nic.in/law/index.htm>) 참조.

관한 법률(Administration of the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Obligation as to fidelity and Secrecy) Act, 1956), 공공부채행정법 (Administration of the Public Debt Act, 1944), 은행규제행정법 (Administration of banking Regulation Act, 1949), 지역농촌은행행정법 (Administration of Regional Rural Bank Act, 1976), 보험행정법 (Administration of the Insurance Act, 1938), (보험규제·개발기관행정법(Administration of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 외환관리법(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등이 있고, 은행에 관한 것으로는, 은행규제법(Banking Regulation Act, 1949), 인도 주 은행법(State Bank of India Act, 1955), 인도 주 은행 행정법(Administration of State Bank of India Act, 1955), 농업 및 농촌개발은행법(National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ct, 1981), 은행서비스위원회법 (Banking Service Commission Act, 1984) 등이 있다. 한편 경제규제에 관하여 담배(생산, 공급, 분배규제)법(Cigarettes (Regulation of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Act, 1975), 국외무역(개발 및 규제)법(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복권(규제)법(Lotteries (Regulation) Act, 1998) 등이 제정되어 있다.

7. 문화 및 교육행정법

인도의 문화행정은 문화, 청소년, 스포츠부(Ministry of Culture, Youth Affairs and Sports)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화와 관련된 법률로는, 고대유물보전법(Ancient Monuments Preservation Act, 1904), 고대기념물 및 지질학적 유적·유물법(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Sites and Remains Act, 1958), 인도박물관법(Indian Museum Act, 1910), 인도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of India Act, 1976) 등이 있다.

언론 및 방송과 관련하여서는 인도연방정부에는 언론방송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관한 입법으로는, 도서출판 및 등록법(Press and Registration of Books Act, 1867), 언론위원회법(Press Council Act, 1978), 인도방송공사법(Prasar Bharati (Broadcasting Corporation Of India) Act, 1990),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규제)법(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ct 1995), 영화법(Cinematograph Act, 1952) 등이 있다.

교육행정을 위하여 인도 연방정부에는 인적자원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산하에 교육국(Department of Education)이 설치되어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인도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각종 교육 및 연구기관에 관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도 의학연구소법(All-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Act, 1956), 아سام 대학법(Assam University Act, 1989), 델리 초등교육법(Delhi Primary Education Act, 1960), 델리 학교교육법(Delhi School Education Act, 1973), 미조람 대학법(Mizoram University Act, 2000) 등이 있다.

8. 정보통신행정법

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하여 인도 연방정부에는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가 설치되어 있다. 이 분야에 관한 입법으로는 인도 전신법(Indian Telegraph Act, 1885), 인도 무선통신법(Indian Wireless Act, 1933),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지적 재산권분야에 관한 법률로서,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7), 특허법(Patents Act, 1970),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이 있다.

9. 자원 및 에너지행정법

자원 및 에너지행정을 위하여 인도 연방정부에는 동력부(Ministry of Power), 석유 및 천연가스부(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석탄부(Ministry of Coal), 광산 및 광물부(Ministry of Mines and Minerals), 대체에너지부(Ministry of Non-Conventional Energy Sources)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관한 입법례로는, 인도 전기법(Indian Electricity Act, 1910), 전기공급법(Electricity (Supply) Act, 1948), 석유법(Petroleum Act, 1934), 유전(규제 및 개발)법(The Oilfields (Regulation and Development) Act, 1948), 석탄광(국유화)법(Coal Mines (Nationalisation) Act, 1973), 석탄광(보호 및 개발)법(Coal Mine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ct, 1974), 석탄(운송규제)법(Coal India (Regulation of Transfers and Validation) Act, 2000), 광산 및 광물(규제 및 개발)법(Mines and Minerals (Regulation and Development) Act, 1957), 원자력 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1962), 에너지보호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이 있다.

10. 군사행정법

군사행정에 관한 법으로는 공군법(Air Force Act, 1950), 육군법(Army Act, 1950), 해군법(Navy Act, 1957) 이외에, 군사 (긴급의무)법(Armed Forces (Emergency Duties) Act, 1947), 군사 (특별권한)법(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1958), 군사 (Punjab and Chandigarh) 특별권한법(Armed Forces (Punjab and Chandigarh) Special Powers Act, 1983), 군사 (Jammu and Kashmir) 특별권한법(Armed Forces (Jammu and Kashmir) Special Powers Act, 1990) 등이 있다.

11. 법무행정법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공증법(Notaries Act, 1952), 여권법(Passports Act, 1967) 등이 제정되어 있다.

V. 행정심판소법(Administrative Tribunals Act)

인도 행정심판소법은 1985년 2월 27일 제정되었다. 동법의 전문에서는 동법은 공공기관에 임명된 자의 채용 및 근무조건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 및 이에 부수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소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동법은 서장, 심판소의 설치와 재판관단의 구성, 심판소의 재판권 및 권한, 심판절차, 기타규정 등 총5장에 걸쳐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장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서장(Preliminary)

동법은 제1조와 제3조에서 각각 이 법의 이름·적용범위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심판소법 제2조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군인,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공무원이나 종사자, 의회 상하 양원 또는 기타 입법기관의 비서관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행정심판소와 재판관단의 설치

제2장에서는 행정심판소의 설치, 심판소 및 재판관단(Bench)의 구성,

소장, 부소장 기타 구성원의 자격, 임기, 사임 및 해임, 급여, 소장의 재정 및 행정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4조에 의하여 연방정부는 연방행정심판소(Central Administrative Tribunal)를 설치하고(제1항), 각 주의 요청에 따라 주 행정심판소(State Administrative Tribunal)를 설치할 수 있다(제2항). 2 이상의 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연방정부는 합동행정심판소(Joint Administrative Tribunal)를 설치할 수 있다(제3항).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동의를 얻어 주 행정심판소의 재판판단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주를 대표하는 연방행정심판소의 재판판단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제5항 a호), 주의 요청에 의하여 주를 대표하는 연방행정심판소의 재판판단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 행정심판소의 재판판단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제5항 b호).

제5조에 의하여 모든 심판소는 소장과 부소장, 그밖의 다른 구성원으로 구성된다(제1항). 재판판단은 각 1인의 사법구성원(Judicial Member)과 행정구성원(Administrative Member)으로 구성된다(제2항).

소장은 고등법원의 판사이었거나 현재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2년 이상 부소장의 직을 유지하고 있던 자이어야 하고(제6조 제1항), 부소장은 고등법원의 판사의 자격이 있거나, 과거 판사였거나 현재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2년 이상 인도 정부 비서관직에 있었거나, 5년 이상 비서관보에 있었던 자, 또는 3년 이상 행정심판소 재판판단의 구성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동조 제2항). 사법구성원은 고등법원의 판사의 자격이 있거나, 과거 판사였거나 현재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인도법령서비스기관(The Indian Legal Service)의 구성원으로서 3년 이상 I 등급(Grade I)의 직을 가지고 있던 자이어야 하고(동조 제3항), 행정구성원은 2년 이상 인도 정부 비서관보에 있었거나, 또는 3년 이상 협력비서관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동조 제3A항).

연방행정심판소의 소장, 부소장 및 그 밖의 구성원은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제6조 제4항). 주 행정심판소나 협력행정심판소의 소장, 부소장

및 그 밖의 구성원은 관련 주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동조 제5항, 제6항).

행정심판소의 소장, 부소장 및 그 밖의 구성원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소장과 부소장의 정년은 65세, 기타 구성원의 정년은 62세다(제8조).

3. 행정심판소의 재판권 및 권한

제3장은 연방행정심판소, 주 행정심판소, 합동행정심판소의 재판관할권과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부수하여 심판소의 모욕에 대한 처벌권, 재판관단에 대한 사무배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연방행정심판소는 주로 전-인도 서비스기관(All-India Service) 또는 인도 연방의 일반서비스기관(civil service) 등에 대한 임용 및 임용관련 문제, 전-인도 서비스기관의 구성원 또는 연방 일반서비스기관에 임명된 구성원 등의 인사관련문제, 연방사무와 관련된 위 구성원들의 서비스(역무, 役務)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제14조 제1항). 연방행정심판소는 그밖에도 연방정부의 감독 하에 있는 지방 및 기타 행정기관 또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감독하는 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임용문제, 그 구성원의 인사문제 및 서비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한다(동조 제3항).

주 행정심판소는 주의 일반서비스기관의 임용문제, 그 구성원의 인사문제, 주 사무에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제15조 제1항), 그밖에도 주 정부의 감독 하에 있는 지방 및 기타 행정기관 또는 주 정부가 소유하거나 감독하는 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임용문제, 그 구성원의 인사문제 및 서비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한다(동조 제3항).

두 개 이상의 주에 대하여 설치된 합동행정심판소는 각 주의 행정심판소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제16조).

동법 제17조는 각 행정심판소는 이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행사하는 바와 동일한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소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 고등법원과 같이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판소에 재판관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부는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재판관단의 사무의 배분 또는 특정 재판관단에 대한 특정 사무의 배분을 정할 수 있다(제18조).

4. 절차

제4장은 심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신청절차, 심판절차, 결정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 사무에 관한 명령(Order)²¹⁾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은 심판소에 침해된 권리의 회복 또는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만약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심판소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신청인의 이의제기나 항의가 거절되고 나서, 정부 및 기타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명령이 있는 경우 또는 6개월이 지나도록 최종적인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권리구제수단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2항).

그러나 최종 명령이 있은 후 1년이 지났거나, 이의제기나 항의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면 심판소에 신청할 수 없다(제21조 제1항).

심판소는 심사를 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규정에 구속되지는 아니하나, 자연적 정의의 원칙(the principles of natural justice)이나 이 법의 규정,

21) 여기에서의 명령은 정부 또는 인도 영토 내에 있는 또는 인도 정부의 감독을 받는 지방 및 기타 행정기관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감독하는 단체 또는 이러한 기관 및 단체의 관료 등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

정부가 제정한 명령(rules)에 따라야 한다. 심판소는 장소의 확정, 조사의 시기 등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제22조 제1항). 심판소는 신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모든 신청은 기록의 상세한 검토, 서면의 주장, 그리고 구두진술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심판소는 심리의 진행에 있어 민사법원이 가지는 증인의 출석과 심문, 서류의 작성과 요구, 증거조사, 위원회의 개최와 같은 동일한 심리절차의 진행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동조 제3항).

심판소에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판판단의 구성원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구성원이 동수로 나뉘는 경우에는 논점을 지정하여 소장에게 문의하고, 소장은 이 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거나 다른 심판소 구성원들에게 듣도록 한다음, 이 사건에 대하여 청문을 거친 모든 심판소 구성원들의 다수에 따라 논점에 대한 결정을 한다(제26조). 신청이나 이의제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심판소의 명령은 최종적인 것이어야 하며, 고등법원을 포함하여 다른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제27조).

5. 기타규정(Miscellaneous)

행정심판소법은 제5장 기타규정에서 헌법과의 관련에서 법원 관할권의 배제, 계쟁사건의 이송, 인도 형법전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동법 제35조는 행정권에 의한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연방 정부의 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Rule)²²⁾을 제정할 수 있는데(제1항), 여기

22) 영미법계 국가에서 행정부에 의하여 제정되는 'Rule'을 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본고에서는 명령이라 번역하기로 한다.

에는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건, 소장, 부소장 등의 직권오용 등의 행위에 대한 심사절차, 신청서의 형식, 심판소의 절차규제권 및 심리절차진행권의 내용 등이 규정된다(제2항).

한편 행정심판소법은 영국에와 마찬가지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제출 절차라는 직접적인 입법적 통제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명령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의회가 이를 수정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출된 명령은 수정된 형태로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제37조).

VI.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2)

인도 정보자유법 2002는 최근인 2003년 1월 6일 제정되었다. 동법의 전문에서는 동법은 행정의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을 위하여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법은 서장, 정보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의무, 기타규정 등 총3장에 걸쳐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장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서장(Preliminary)

동법은 Jammu와 Kashmir를 제외한 인도 전역에 적용된다(제1조 제2항).

동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규정인데, 먼저 이 법에서 말하는 정보의 자유는 검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기록의 복사, 컴퓨

터 기타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디스켓, 플로피 그 밖의 전자방식 또는 그 출력본 등의 방식에 의하여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라 의미한다(동조 c호). 여기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의 행정, 작용 및 결정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고(동조 d호), 기록은 모든 문서·원고·파일, 문서의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필름카드·팩시밀리 복사본, 마이크로필름의 이미지 또는 그 표현물의 재생산물, 그 밖의 컴퓨터 기타 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자료 등을 의미한다(동조 h호). 동법에서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헌법이나 정부의 제정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된 모든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정부의 소유 및 감독 하에 있거나 또는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금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동조 f호).

2. 정보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의무

동법 제3조는 정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모든 시민(all citizens)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가지게 된다.

동법 제4조는 시민의 정보자유권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그 기록을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고 색인을 붙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명령의 규정된 바에 따라 조직의 세부사항, 기능 의무, 기관구성원의 권한과 의무 및 그 결정절차, 공공기관에 의하여 정립된 명령, 규칙, 지시, 안내 기타의 기록,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유용한 시설의 세부사항, 공공정보사무관(Public Information Officer)의 이름, 호칭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정 간격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공공기관은 공공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 주요 결정 및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공표하고, 그 결정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의 차수 이전에 공공 일반에게 또는 그 프로젝트의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인정되는 자에게 이들에게 유용한 사실을 공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5조는 정보사무관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1인 이상의 정보사무관을 임명하여야 한다(제1항). 정보사무관은 정보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정보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제2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제3항), 요청 받은 기관은 모든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제4항).

정보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의 세부사항을 지정하여 정보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이 서면의 형태가 아닌 경우, 정보사무관은 신청인에 대하여 구두로 이를 서면으로 하도록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

정보사무관은 정보신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그러나 늦어도 30일 이내에 신청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 제9조의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다. 그러나 신청된 정보가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신청 후 48시간 내에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정보사무관은 제11조에 규정된 제3자의 주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정보사무관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거부사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제기기간, 이의신청기관(the appellate authority)을 알려야 한다(동조 제3항). 정보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자료를 변질시키거나 기록보관의 안전성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통상 신청된 바대로 제공되어야 한다(동조 제4항).

한편 동법은 제8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하여 7개의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도의 주권과 통합, 주의 안전, 과학 및 경제적 이해에 관한 정책, 외교행위, 공공의 안전과 질서, 수사, 계쟁사건의 공정한 재판, 연방-주 관계에서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각료, 장관 기타 관료회의의 심의자료를 포함한 내각문서, 결정절차에서의 관료의 추천의견, 법적 자문 등에 관한 기록, 공공기관의 정당한 경제적·상업적 이해관계나 경쟁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인에게 부당이득 및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무역 및 상업비밀, 의회 및 주 입법부

의 특권을 침해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1항).

제9조에서는 계속해서 정보거부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정보공개신청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요구하는 정보의 분량이 공공기관의 기능저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이미 법, 명령, 규칙 처분 등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는 정보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이미 공공에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사인의 사생활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신청은 거부될 수 있다.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동법은 제11조에서 제3자 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제3자와 관련되었거나, 제3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하여 기밀이 유지되어온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문서의 형태로 이를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항). 정보사무관으로부터 공지를 받은 제3자는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항). 제3자에게 이의제기의 기회가 제공된 경우에 정보사무관은 정보공개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를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이 경우 통지에는 이에 대하여 제12조에 의하여 이의신청(Appeal)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항).

정보사무관의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는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명령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Appeal)을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한 제2의 이의신청(Second Appeal)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방정부, 주 정부 또는 해당 행정기관에 제기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고, 이 기간은 서면의 이유를 불여 연장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의가 제기된 정보사무관의 결정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동조 제4항).

3. 기타규정(Miscellaneous)

제3장에서는 기타규정으로서 선의의 행위에 대한 보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행정기관에 의한 명령제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연방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특히 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의 공표와 관련된 적정기간의 간격, 이의신청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2항). 주 정부(제18조)와 해당 행정기관(제19조)도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입법으로서 행정기관에 의한 명령제정권과 관련하여 정보자유법은, 행정심판소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제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명령은 연방의회의 각 원에, 주 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명령은 주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의회가 이를 수정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출된 명령은 수정된 형태로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제20조, 제21조).

VII. 맷음말

인도의 법제는 오랜 기간의 영국의 식민지통치를 통하여 영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영국법의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영미식의 법제가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인도의 법률 가운데 이미 1800년대에 제정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시점을 전후로 해서 법제의 단절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행 법제는, 과거와는 단절된 채, 비로소

해방 이후에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비교가 된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도 행정법은 현재 방대한 양의 성문의 법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경우 거의 모든 행정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성문 행정법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행정분야, 예컨대 환경법분야의 경우에는 법제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인도행정법 가운데, 영미법계 국가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소에 관한 법률과 최근에 제정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고, 다른 행정법규법은 이를 개관해 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인도 행정법은, 이미 언급한 바대로,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는 각 개별행정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주제검색키워드 : 인도 행정법(Indisches Verwaltungsrecht), 인도의 개별행정법(Besonderes Verwaltungsrecht des Indien), 인도의 법학교육 (Rechtliche Ausbildung des Indien), 행정심판소법(Administrative Tribunals Act),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2).

<Zusammenfassung>

Indisches Verwaltungsrecht

Kim, Nam-Cheol

Hier geht es um das indische Rechtssystem, insbesondere das indische Verwaltungsrechtssystem.

Durch langfristige englische Kolonialzeit hat das Indien das englische Rechtssystem rezeptiert. Nach diesem englischen Einfluß gibt es zwar in Indien keinen Begriff, 'das Verwaltungsrecht als eingenen Bereich des öffentlichen Recht' wie im kontinentalen Kodex, aber gibt es dort viele Gesetze über die Verwaltung wie die Länder, die zum kontinentalen Kodex gehört: In Indien bestehen vielfältige Verwaltungsausschüsse und viele Gesetze über die Organisation und Kompetenzen dieser Ausschüsse. Außerdem hat das Indien viele Gesetze über Verwaltungsgebiet, zentrale und lokale Verwaltungsbehörde, Rechtsverordnung, Öffentlichkeit der Verwaltungsinformation, Widerspruchsverfahren und sonstige vielfältige besondere Verwaltungsrechtsbereiche.

In dieser Abhandlung wird zuerst grundlegendes Verständnis über das indische Verwaltungsrecht dargestellt, und danach ein grober Umriß über die oben genannten aktuellen Gesetze gegeben. Insbesondere werden das Gesetz über Verwaltungswiderspruch (Administrative Tribunals Act) und das Gesetz über Öffentlichkeit der Verwaltungsinformation(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2) etwas genauer untersucht, weil diese zwei Gesetze von den indischen Verwaltungsgesetzen von Bedeutung sind.